

【 해외금융뉴스: 일본 】

금융청, 금융위기 대응책으로 자기자본규제 완화 조치

□ 일본 금융청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긴급시장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은행들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천명함.

- ‘주가폭락 →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 하락 → 대출거래 부진으로 인한 기업들의 투자 경색 → 경기침체’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 주목적임.
- 기존 법률 아래서는 국제 업무를 관장하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8%이상, 국내 업무에 특화된 지방은행 등은 4% 이상의 자기자본비율*을 유지해야 함.

* 자기자본비율 : 대출 등을 포함한 총자산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.

- 보유 중인 유가증권에 평가손이 났을 경우 약 60%를 자본금이나 자본준비금 등의 이른바 ‘핵심적 자기자본’에서 공제해야 하는데, 최근 주식시장 폭락으로 인해 자기자본비율이 저하된 금융기관이 다수 있을 것으로 관측됨.
- 이번 규제 완화책으로 은행은 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 전반의 평가손을 자기자본에서 공제하지 않아도 되며, 국제 업무를 실시하는 주요 금융기관들 역시 국채나 지방채 등에 한정해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음.

□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자기자본비율을 상승시켜 대출거부 사태를 막는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긍정론과 오히려 불투명한 경영을 조장하여 재무건정성 확보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회의론이 공존하고 있음.

- 정부는 금융기관의 보유주식에 고액의 평가손이 발생, 지역 금융기관 등을 중심으로 자기자본이 큰 폭으로 감소, 결국 대출거부 사태로 이어질 공산이 크므로 방지 차원에서 이번과 같은 긴급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함.
-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를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평가 절하하고, 오히려 금융기관들의 경영을 불투명하게 만들어 금융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.

(마이니치신문 11/8,
산케이신문 11/8)
일본 금융청 홈페이지 11/8)